

#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276
------	------

2023. 12.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9일, 김기덕 의원(찬성자 1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기덕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울시 관광산업 극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관광기념품 개발 · 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입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평가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 및 고시와 통지, 지정 효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에서 제15조)
- 관광기념품 사후관리 및 지정 해제에 관해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
- 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사무의 위탁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제정의 필요성

- 서울시는 현재 「관광진흥법」 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를 근거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광기념품 관련 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0개의 시·도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도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음.

### <타 시·도 제정현황>

번호	자치단체명	자치법규명
1	경기도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2	경상남도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3	경상북도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7	전라남도	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8	전라북도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10	충청남도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다. 조문별 검토

### 1) 용어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방안 마련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2) 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 제정안은 관광기념품 관련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위원회 구성의 남설을 방지하기위해 비상설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과 같이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위촉위원을 ‘공예품 또는 농·수·축 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

장' 으로 규정할 경우, 농·수·축·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없으며, 공예품도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공예박물관 소관으로 더 적합해 보이므로 조례의 소관부서인 '관광산업을 담당하는 과장' 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종 위원회 설치의 경우 제정안처럼 위원회의 목적·기능, 위원의 구성·임기 외에도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등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p>제5조(구성 등) ①~③ (생략)</p> <p>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서울시의회 의원</p> <p>2. 공예품 또는 농·수·축·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p> <p>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p> <p>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p> <p>⑤ (생략)</p>	<p>제5조(구성 등) ①~③ (제정안과 같음)</p> <p>④ ----- ----- -----.</p> <p>1. -----</p> <p>2.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p> <p>3. -----</p> <p>4. ----- -----</p> <p>⑤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수당 등) (생략)</p> <p>&lt;신설&gt;</p>	<p>제8조(수당 등) ① (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p>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3) 경진대회 등 개최와 입상자 지원(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 안 제9조는 시장이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는 해마다 공모전을 개최하여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관광기념품 또는 디저트 등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마케팅 사업과 서울시가 개최·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주요 인사 및 관계자 기념품이나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해외 방문 및 초청 외빈 기념품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제정안(안 제2조) ‘관광기념품’은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0조는 경진대회 입상자를 전국단위 경진대회 입상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 유지 차원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수정의견 >

제정안	수정의견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u>서울특별시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u>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 <u>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u> ----- ----- -----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생략)	----- 1.~4. (제정안과 같음)
------------------------------	--------------------------

#### 4)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관련(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 제정안은 관광기념품 개발·제작·판매업체 중 개발과 제작기술,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는 이러한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서 지정업체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위해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기관과 평가반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운용에 있어 집행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5) 관광기념품 업체 육성과 마케팅 활동 등 지원(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

- 안 제19조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산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의 지원 또는 용자알선▶포장 디자인과 브랜드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20조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관광기념품 업체와 관광기념품 마케팅에 대한 이러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은 안 제21조(사무의 위탁)을 근거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 수행할 것으로 보임.

관광기념품 사업의 개발과 육성을 통해 서울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공감하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Ⅴ.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 Ⅵ. 수정안의 요지

##### 1. 수정 이유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촉위원을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조례안의 지원범위를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으로 한정함.

##### 2. 수정 주요내용

- 가.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안 제5조제4항제2호).
- 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다. 지원범위를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으로 한정함(안 제10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공예품 또는 농·수·축·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을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5조(구성 등) ①~③ (생략)</p> <p>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시의회 의원</li> <li>2. <u>공예품 또는 농·수·축·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u></li> <li>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li> <li>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li> </ol> <p>⑤ (생략)</p>	<p>제5조(구성 등) ①~③ (제정안과 같음)</p> <p>④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u>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u></li> <li>3. -----</li> <li>4. ----- -----</li> </ol> <p>⑤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수당 등)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8조(수당 등) ① (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u>서울특별시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u>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4. (생략)</p>	<p>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 <u>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u> ----- ----- -----.</p> <p>1.~4. (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3.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방안 마련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원

2. 관광산업분야 담당 과장

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

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제작·판매 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기관)**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정 신청)**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시장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정 고시와 통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 효력)** ① 제11조에 따른 지정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경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용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마케팅 활동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및 홍보 촉진 활동
2.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표창)** 시장은 서울특별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